

국회의원(이철규) 징계안

의안 번호	7406
----------	------

요구연월일 : 2025. 1. 9.

요 구 자 : 박성준 · 강유정 · 김남희
김성희 · 김용만 · 김용민
노종면 · 모경중 · 박민규
백승아 · 부승찬 · 서미화
송재봉 · 안태준 · 윤종균
전용기 · 정을호 · 정준호
정진욱 · 조계원 의원
(20인)

주 문

국회의원(이철규)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그러나 국회의원 이철규는 2025년 1월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 과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를 두둔하는 등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음.

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곳으로서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태 수사의 최전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임. 그럼에도 국회의원 이철규는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라며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반헌법적 작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내란수괴 등 내란죄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명백한 수사 방해 목적을 드러냄.

라.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이철규는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무마와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임.

마. 국회의원 이철규는 101경비단에 대해서도 “101경비단 등 다 없애 버리라”, “경찰을 없애겠다고 선언해 버리라”는 국가기관인 경찰청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을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수사기관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실상 무법천지와 무정부사태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망언까지 일삼음.

바. 국회의원 이철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함에도 내란의 조기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함으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라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음.

사. 이에 국회의원 이철규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4조(직권남용금지),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및 제123조(직권남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